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신고 등) 단서조항에서는 신고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시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규정 정비
(안 제53조의2)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안 별표2, 별표7,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시행규칙 제53조의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분류		모델 구분
가. 화학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

별표 7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분류	품목
가. 화학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비고

1. 산업용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업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신고내용	제품명		모델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제품명		모델명	
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 조 업 자	제조국명		
	회사명		
대 상 제 품	제 품 명	모 델 명	
	수 량	금 액	
사 용 장 소			
면제내용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V 체크)

- ① 제조업자 판매용() ②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대상 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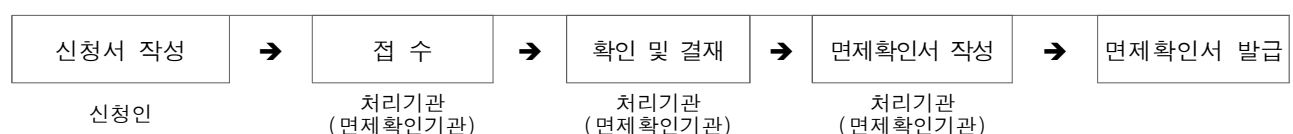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외 확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조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모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내역서 등) 및 제품설명서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별지 제2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면제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면제됩니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제5호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의 경과조치) 별표2 제5호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이라도 대상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 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 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2(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개정(안)

현행	개정안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대상 없음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table><tr><th colspan="2">분류</th><th>모델 구분</th></tr><tr><td>가. 화학</td><td>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td><td>-</td></tr></table>	분류		모델 구분	가. 화학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
분류		모델 구분					
가. 화학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					

‘시행규칙 별표7(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개정(안)

현행		개정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분류	품목	분류	품목
가. 화학	대상 없음	가. 화학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나. 생활	대상 없음	나. 생활	대상 없음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다. 기계금속	대상 없음
라. 섬유	대상 없음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비고 1. 산업용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업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안)

현	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0%;">접수번호</th><th style="width: 40%;">접수일시</th><th style="width: 40%;">처리기간</th></tr> <tr> <td></td><td></td><td>7일</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신고인</td><td style="width: 30%;">업체명</td><td style="width: 60%;">사업자등록번호</td></tr> <tr> <td>대표자 성명</td><td>전화번호/팩스번호</td></tr> <tr> <td>주소</td><td></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신고내용</td><td style="width: 30%;">제품명</td><td style="width: 60%;">모델 구분</td></tr> <tr> <td>모델명</td><td>유형</td></tr> <tr> <td>하위-안자름</td><td>분류 유형-안자름</td></tr> <tr> <td>제조업체명</td><td>대표자 성명</td></tr> <tr> <td>주소</td><td></td></tr> </tabl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첨부서류</td><td style="width: 4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td><td style="width: 30%;">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td></tr> </table> 처 리 질 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신고서 작성</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접 수</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확인 및 결재</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확인증명서 작성</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확인증명서 발급</td></tr> <tr> <td>신고인</td><td></td><td>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td><td></td><td>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td><td></td><td>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td><td></td><td></td></tr> </table>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신고내용	제품명	모델 구분	모델명	유형	하위-안자름	분류 유형-안자름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0%;">접수번호</th><th style="width: 40%;">접수일시</th><th style="width: 40%;">처리기간</th></tr> <tr> <td></td><td></td><td>7일</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신고인</td><td style="width: 30%;">업체명</td><td style="width: 60%;">사업자등록번호</td></tr> <tr> <td>대표자 성명</td><td>전화번호/팩스번호</td></tr> <tr> <td>주소</td><td></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신고내용</td><td style="width: 30%;">제품명</td><td style="width: 60%;">모델명</td></tr> <tr> <td></td><td></td></tr> </tabl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첨부서류</td><td style="width: 4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td><td style="width: 30%;">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td></tr> </table> 처 리 질 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신고서 작성</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접 수</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확인 및 결재</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확인증명서 작성</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확인증명서 발급</td></tr> <tr> <td>신고인</td><td></td><td>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td><td></td><td>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td><td></td><td>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td><td></td><td></td></tr> </table>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신고내용	제품명	모델명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신고내용	제품명	모델 구분																																																																																			
	모델명	유형																																																																																			
	하위-안자름	분류 유형-안자름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신고내용	제품명	모델명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안)

현		개 정 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table border="1"> <tr> <td>접수번호</td> <td>접수일시</td> <td>처리기간 7일</td> </tr> <tr> <td rowspan="3">신청인</td> <td>업체명</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대표자 성명</td> <td>전화번호/팩스번호</td> </tr> <tr> <td>주소</td> <td></td> </tr> <tr> <td rowspan="3">확인 신고 내용</td> <td>제품명</td> <td>제조업체명</td> </tr> <tr> <td>안전기준상와 모델 구분</td> <td>모델명</td> </tr> <tr> <td>제조국명</td> <td>신고확인증 번호</td> </tr> <tr> <td colspan="3">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td> </tr> </tabl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table border="1"> <tr> <td>첨부서류</td> <td>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td> <td>수수료</td> </tr> <tr> <td></td> <td></td> <td>「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td> </tr> </table> 처 리 결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제품명	제조업체명	안전기준상와 모델 구분	모델명	제조국명	신고확인증 번호	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검용) <table border="1"> <tr> <td>접수번호</td> <td>접수일시</td> <td>처리기간 7일</td> </tr> <tr> <td rowspan="3">신청인</td> <td>업체명</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대표자 성명</td> <td>전화번호/팩스번호</td> </tr> <tr> <td>주소</td> <td></td> </tr> <tr> <td>확인 신고 내용</td> <td>제품명</td> <td>모델명</td> </tr> <tr> <td>변경 신청 내용</td> <td colspan="2">(필요시 별지 사용)</td> </tr> </tabl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table border="1"> <tr> <td>첨부서류</td> <td>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td> <td>수수료</td> </tr> <tr> <td></td> <td></td> <td>「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td> </tr> </table> 처 리 결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확인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제품명	모델명	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제품명	제조업체명																																																	
	안전기준상와 모델 구분	모델명																																																	
	제조국명	신고확인증 번호																																																	
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제품명	모델명																																																	
변경 신청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안)

현행

행

<신 설>

개정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명		
	회사명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V 체크)
① 제조업자 판매용() ②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대상 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 제6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자체 확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조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모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내역서 등) 및 제품설명서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일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안)

현행

<신 설>

개정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면제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직인

비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검증, 안전확인신고, 공공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공자적합성 확인신고 등이 면제됩니다.
----	--